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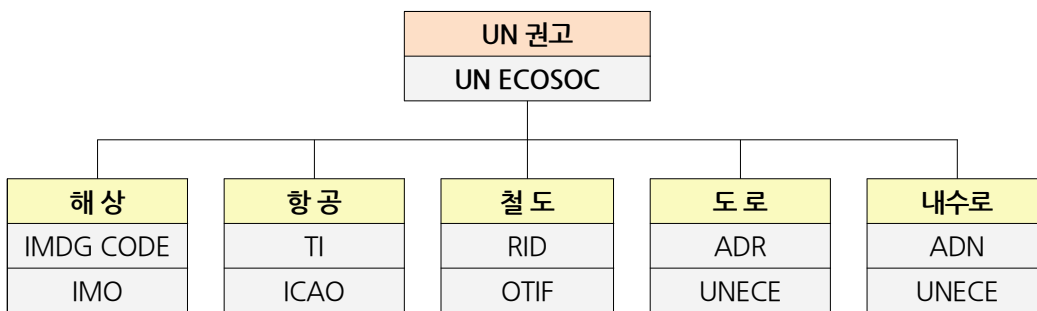
1.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의 구조

1.1 위험물의 정의 및 범위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된다.

1.2 운송모드별 국제규칙



운송수단	관련 기구	규칙의 명칭
해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항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철도	국제철도연맹(OTIF)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도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내수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1.3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한국)” 또는 “국제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또는 화주)은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해당 위험물에 가장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며, 표시, 표찰 및 대형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운송 관련 종사자는 일반인식/친숙화 교육, 직무별 교육 및 안전교육 등 위험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선박안전법 제41조의2), 위험물 관련 사고 시의 비상조치법(EmS) 및 의료응급처치법(MFAG)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송인(또는 화주) 및 선박 소유자(또는 선장)는 위험물과 관련된 선적서류(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위험물 신고서 등)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선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근간으로 1965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정이다.

IMDG Code에는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그 위험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 분류하고, 이들 각 급(class)의 판정기준, 포장방법, 표시 및 표찰 부착방법, 포장용기의 제조 및 시험기준, 위험물 운송서류, 선상에서의 위험물 적재 및 격리방법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IMDG Code는 2년마다 개정되며, 2002년 30차 개정판까지는 권고수준이었으나 2004년 31차 개정판부터는 강제화되었다.

IMDG Code는 위험물의 포장,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MDG Code가 강제화됨에 따라 수출입국에서는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준수 점검(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항만국 통제(PSC) 및 육상 종사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위험물의 제조자, 수출입자 또는 운송사의 관련 규정 미준수로 수출입 업무 지연 또는 벌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위험물 제조, 수출입 및 운송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규정 미준수로 말미암은 벌금부담 또는 하역지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